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도 업무계획

2009. 2.

국가인권위원회

차 례

□ 2009년 업무계획 총론

□ 2009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별 사업계획

2009년 업무계획 총론

□ 수립 배경

- 2008. 11. 10.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및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2009년도 업무계획(안) 수립
- 조직개편 협의, 예산안 확정, 본부 및 팀별 전략업무 재조정, 팀간 동시 추진 과제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각 단계별 유연성을 염두에 두고 ‘초안 ⇒ 사무처 잠정안 ⇒ 위원회 최종안’ 순으로 진행

□ 수립 경과

- 인권증진행동계획 및 조직개편 추진단 TF 구성 : 12월 1일
- 팀장 대상 업무계획 수립 지침 설명회 개최 : 12월 3일
- 팀별 업무계획 초안 마련 : 12월 8일 ~ 15일
- 업무계획 추진단과의 팀별 미팅 및 수정: 12월 18일 ~ 26일
- 2009 사업계획 사무처 잠정안 확정 : 12월 31일
- 인권시민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1월 20일
- 상임위 의결 : 1월 30일
- 전원위 의결 : 2월 2일

□ 업무계획의 구성 및 특징

-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적극적 반영
 - 관리과제와 일반사업으로 구분해 작성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최우선 검토
 - 2009~2011 3개년 계획 속에서 추진방안 제시
 - 통상적 수행 업무는 일반사업으로 분류
 - 5대 이행지침의 상시적 반영
 - ※ 표1 참조

-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의 'Top-down, Bottom-up' 체제 병행
 - 기존 팀별 사업계획 취합에서 벗어나 기획조정 마인드 가미
 - 업무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팀별 초안 마련 ⇒ 가이드라인에 따른 협의 절차 진행 ⇒ 팀별 수정안 마련
 - 업무계획 수립 단계부터 TF가 기획조정 기능 수행

- 내·외부 변수에 따른 전략적 대응
 - 위원회 조직개편 진행 절차에 따른 대응
 -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
 - 전략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 재분배 및 인력 재배치 추진
 - 내·외부 변수를 고려한 단계별 업무계획 수립

- 조직 차원의 성과달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 통합적 업무 수행 등 본부 및 팀간 업무 재조정 검토
 - 성과와 효과에 따른 과감한 통합 및 축소 조정
 - 팀 성과와 위원회 성과의 일원화 추구
 - 개별 관리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 및 방향 제시
 - 위원회 핵심 전략 업무의 집중 효과 제고
 - 팀간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 업무수행 모델 도입

표 1.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상의 전략목표 개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미션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I. 기본적인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성과목표	1-1. 신체의 자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2-1. 학생 인권 개선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5-1.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4-2.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4-3. 결혼이주여성 인권 증진	5-3. 장애인 차별 개선
	1-4. 정보인권 증진	2-4. 노인 인권 보호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5-5. 여성 인권 보호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이행지침	국제인권기준 상용화	성 평등 관점	독립성 강화	고객/시민 중심화	파트너십 강화

2009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별
세부 사업계획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①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실태 파악을 통한 인권개선

- 위원회 출범 이후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파악 전무
 - 민간병원 정신과 인권상황과 비교 평가, 입원 전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사례 조사 병행
 - 외부 연구용역 의뢰, 인권침해 문제점 및 정책권고 추진

②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회의 개최

- 2006년 정책 권고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국내적 구금시설 감시기구 모델 모색

○ APF 협력·공동 주최 추진

- 관련 전문가들(선택의정서 성안 관련 국제단체, 고문방지소위원회, 실제 활동 중인 국가방지기구, 국내 관련 입법·사법·행정 전문가, 시민사회·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효과적인 선택의정서 이행 방안 논의

③ 구금시설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호 강화

④ 피구금자 인신보호 및 처우 개선

2. 표현의 자유 강화

① 사이버 수사와 관련한 인권현안 검토

- 사이버공간 활동 비중이 증대하면서 Off-Line 상 경찰작용과는 다른 On-Line 상 경찰작용의 특성이 쟁점으로 부각
 - 특히 기존 법률이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법령 및 제도 미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사이버 수사시 포괄적 압수 수색관련 법령·제도·관행 개선
 - 하드디스크 저장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 압수 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문제, 관리자 범위 문제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
 - 인터넷 포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시 포털서비스의 과도한 중단 조치 등
- 통신제한 조치를 통한 사생활비밀 침해
 - 과도한 로그인 기록 추적, 이메일 계정 열람, 기타 과도한 통신제한 조치 등
- 인터넷 상 새로운 수사기법에 따른 인권침해
 - 미끼 메일 발송을 통한 피의자 추적, 본인동의 없이 ID정보 이용을 통한 추적 등

②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검토

- 인터넷 포털 블로그, 카페 게시물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삭제명령, 선거에 관한 사이버 상 규제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

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보장

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자유권 관련 권고 이행 강화

○ 자유권 관련 지속적 개선 권고사항인 사형제, 대체복무제 불인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사업 진행 필요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2007년 UPR 권고 사항 분석
 - 자유권규약위원회와 UPR 권고 사항을 토대로 법제도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검토
- 종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이후 변화된 사회 및 법제 상황 조사 분석
 - 기 실시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후 변화된 상황을 파악해 현실적 접근 방안 마련
-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토론회 개최(5월)
 -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관련 피해자와의 정책토론회 개최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표명 추진(1월)
- 보안관찰법 모니터링
-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관련 모니터링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② 공공부문 종교차별(편향) 개선 방안 모색

○ 종교차별(편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공식사회와 학교에서의 종교차별(편향)을 해소함으로써 종교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사업 진행 필요

- 종교 차별(편향)과 정교분리 관련 실태 및 개선 방안
 - 종교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종교차별(편향) 사례 분석
 - 종교 차별(편향)과 정교분리 법제도 실태분석
 - 종교 차별(편향)과 정교분리 관련 개선 방안
-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편향) 문제 해소 방안
 -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 특히 종교편향에 대한 사례와 유형, 그리고 관련 법 제도 분석
 - 종교차별적 공직 인선, 정책결정 및 집행 관련 종교차별,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자유 및 정교분리 침해 사례 등을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학교에서의 종교차별(편향) 문제 해소 방안
 - 최근 학교내 종교행사 강요 등으로 사회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학교내 종교강요 및 편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특히 초중고의 특정 종교의식 실태조사, 학교내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아침조회 경건회 및 종례시 찬양기도, 우등상 지급 조건, 종교기관 탐방, 특별활동 시간 운영 등)와 종교재단 사립학교의 학교내 종교강요 및 차별(편향)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
 - ※ 종교차별(편향) 금지 토대 마련 및 단기정책 과제 개발
 - “특정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와 같은 단기간 정책 검토 사안의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권고

4. 정보인권 강화

①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범죄 예방, 행정 효율성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명분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의견제시 필요

- 정보인권전문위원회(정보인권보호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보인권자문위원회(또는 정보인권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인터넷 규제와 감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정보인권 정책검토 기본계획안 마련
- 사이버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신설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 형벌 강화를 통한 사이버 여론 형성 제한의 적정성 검토
- 인터넷 실명확인제 확대의 타당성 검토
 - 인터넷 실명제 강화(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사항)를 통한 인터넷 여론 형성의 입구 제한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의견 제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한 사이버 감시 강화에 대한 견제
 - 인터넷을 통한 사적 통신 자료를 감청하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표명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② 정보인권 보호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최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 위험 상존, 정보인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인권 보호기준 마련 필요

- 자기통제권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유통 실태조사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이용 등 유통 경로(온라인, 오프라인) 및 침해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 ※ 10명 내외의 각계 인사 표본 추출, 개인정보 유통 현황 파악
- 국내 개인정보 법제의 변화 연혁과 개인정보 보호의 실제 비교 연구
- 선진 외국의 정보인권 현안과 법제 연구
 - EU,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외국의 정보인권보호 동향 및 주요 법제 연구·분석
- 정보인권 보호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 사업 진행
 - 정보인권 전문위원회(또는 정보인권 전문가 회의) 구성 및 운영
 - 영역별 정보인권 지수 개발 및 분석
 - 관련 실태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한 정보인권 보호기준 초안 마련
 - ※ 정보인권보호기준 수립 사업을 '2010~11년 사업으로 진행 예정

③ 지자체 CCTV 설치 운영 실태와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검토

- 지자체, 경찰 등에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많은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비점 제기
 - ※ 동아일보(2008. 11. 14.), “가정집 안방까지 볼 수 있는 방범 CCTV 상황실” : 순찰인력 부족으로 용역회사 직원이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 논란 등

- 2004. 우리 위원회의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내용 대비 현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비교분석
- 3~4개 지자체를 선정해 CCTV 설치·운영 실태 파악
 - 설치 목적 및 현황(설치 대수, 기능, 설치 지역, 배치 기준 등)
 - 설치 시 주민 참여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모니터링 방법 및 자료 관리 실태(인원, 장소, 활용 등)
 - 설치 후 활용 실태, 범죄 예방 효과, 운영 상 애로 사항 등
-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 설치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검토

④ 공공기관 정보인권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간담회 개최

-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공공기관 정보인권 관련 교육자료 제작
- 공공기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II 아동·노인 인권향상

1. 학생인권 개선

①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

- 학생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학교 구성의 3주체 중 하나인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와 학생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초기 또는 중간단계에서 교육 당국, 교원단체 등과의 공동사업 추진 검토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생 참여 방안 검토
 -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도화
- 학생회 구성 및 운영의 자치권 보장
 -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학생회 구성을 위한 절차 등 검토
-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획조사 실시
 -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각 시·도 조례, 각급 학교 교칙 및 생활규정 분석
 - 기초조사를 토대로 본안조사 대상 선정 후 기획조사 실시

② 인권친화적 학교(초·중등)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학교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매뉴얼'에 대한 지역별 순회교육 및 사회협약 추진을 통해 친인권적 학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

- 인권친화적 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인권시범학교 운영
 - 16개 시도교육청 및 인권교육연구학교(1기~3기), 인권교육 실천교사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성과를 아우르는 “인권교육 종합전시회” 개최
 - 인권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2차년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종합보고대회에 따른 전국적 홍보 추진
- 인권교육 협력강화를 위한 학교운영협의회 내실화
 - 학생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공식 협의체인 학교인권교육협의회와 교원연수 담당 기관인 시·도 교육연수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학교인권정책 협의 강화
- 인권교육 실천사례 대회 추진
 - 제7회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체험사례 공모 및 실천대회 개최를 통해 인권교육 사례 및 활동가를 발굴하고 인권교육가 네트워크 구축
 - 농·어·산촌 등 학교현장 방문프로그램의 운영 등 방문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인권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에 따른 프로그램의 검증·발전 절차로 활용
- 인권친화적인 교과서 개발활동 전개
 - 2009년 교과서에서 개정된 인권관련 내용을 파악·분석 후 홍보를 추진하고, 출판된 교과서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실시
 - 또한 2010년 교과서 개편 시 친인권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에 인권교육 자문 및 관련 자료 지원 상설창구 개설,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는 인권교육자료 재가공 및 개발을 통해 친인권적 교과서 개발
-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 위원회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인권현장학습을 통해 인권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매뉴얼’에 대한 지역별 순회교육 및 사회협약 추진을 통해 친인권적 학교문화 확산 도모, 우수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

2.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개선

① 비 학생 청소년 임금보장 등 노동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개선

- 우리 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06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해 예비노동자라 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권 개선 방안 모색
-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와의 상시적 교류, 협력, 간담회를 통해 인권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부처(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등)와 정책 협의 개최
- 이미 일반화된 청소년 '알바'에 대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노동,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권고

② 아동·청소년 방임 관련 인권개선 검토

- 방임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과제를 검토해 관련 법제의 개선을 권고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
- 09년도 추진 내용
 - 방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검토
 -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
 - 결과를 토대로 법령 등 개선권고

3. 스포츠 선수 인권보호

-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스포츠 인권 정책(National Strategy for Sport and Human Rights) 수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09년에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정책·제도의 실행을 촉진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개선 사업 확대 추진

① 내실 있는 '최저학업기준 인정제도' 도입 추진

- 최근 당정협의회 등에서 합의된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 전국소년체전, 합숙소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②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 제3차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학 체육학과와 선후배간 폭력 실태조사, 중도탈락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제시
- 해외 선진사례 연구
 -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사례 연수
 - ※ 해외 탐방은 언론사의 특집 프로그램 기획과 연계 방안 검토
- 해외 선진사례 연구, 학부모, 지도자, 정책관계자 워크숍 개최

③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 구축 및 웹사이트 개설 검토
 -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스포츠 인권 전문 웹사이트 개설 검토
 - ※ 예산의 한계로 직접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간접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④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

- 스포츠 종목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단체, 개인, 투기, 기록 등 종목별 폭력·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신체접촉이 빈번한 종목별 특성에 맞는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재개발
 - 아이스브레이크, 동영상,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입체적 교안 마련
 - 각 종목별 스포츠 전문가와 청소년, 성폭력 인권전문가 참여 유도
-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및 조직
 - 스포츠 스타 및 현장지도자, 체육과학연구원 및 체육학과 교수, 체육시민연대 등 NGO, 청소년 및 성폭력 인권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강사단 워크숍 개최(년 3회)
 - 학생운동선수의 교육 특성을 배려한 참여 학습방법론 접목

- 전국 학원스포츠 순회 인권교육 실시
 - 10개 주요 기초·광역자치단체 학생운동선수(2,000명), 지도자(600명), 학부모(200명) 대상 인권교육 및 간담회 진행
 - 종목별, 성별 맞춤형 학습권 존중 인권교육 실시
 -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토론형, 참여수업 진행
-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체육회, 교육과학기술부, 체육학회, 체육시민연대(NGO) 등과 협력
 - 스포츠분야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 도모
 - 스포츠분야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력 체계 구축

4. 노인 인권보호

-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당사자 주위에 입각해 노인 스스로 노인 인권의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견인 및 지원
- 노인인권 정책과제 중 시급하고 실질적인 효과 체감이 용이한 사안부터 단계별로 접근해 노인 사업의 당위성과 유효성 확보

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 구축

- 전문가 자문단 구성
 - 노인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개념화 및 우리 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제시
-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 한국은퇴자협회,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등 현재 활동 중인 NGO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 조성
 - 노인 자원활동가를 조직하여 위원회 활동에 투입 하고 노인인권 리더로 양성
- 노인 인권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
 - 시설 및 지역의 노인 학대·방임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등 각 영역별 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활용해 시급한 개선 사항 정책 권고 및 캠페인 전개

- 주요 의제에 대해 당사자, 전문가, 중앙 및 지방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② 방문조사 등을 통한 노인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외부 용역 실시
- 2-3개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실시
 - 조사단 구성시 대학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 노인복지시설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영역별 전문성 확보

③ 노인 인권 교육 활성화

- 인권교육 공동추진단 구성 운영
 - 인권위, 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교육프로그램 마련, 강사지원, 장소섭외 등 일련의 업무를 공동 추진
 - 기 개발된 노인분야 인권교재 발간·보급 및 활용 워크숍 개최
- 노인 관련 이용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노인 관련 이용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상반기 완료)
 - 노인 관련 이용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연수과정 운영,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개설(연 1회)
 - 노인 관련 단체·기관 등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 인권교육 프로그램·강사 지원 및 사회적 인식 사업 전개(3~11월)

Ⅲ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① 사회권 지표 개발 및 시행

- 사회권 현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회권 지표 개발(07년 연구용역, 08년 연구결과 논의 및 심포지엄 결과 등) 후속작업

- 관련 단체 전문가와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체제 구축
 - 지표개발 필요성 확인 및 역할 분장
 - 사회보장, 건강, 노동, 교육, 주거 등 5개 지표에 대한 보완 작업
- 1차 지표(시안) 선정 및 적용 결과 도출
 -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고, 현행 관련 자료를 이용해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실험적으로 제시 적용
 - 1차 지표 적용 결과 활용한 정책 권고 등 검토(토론회 등을 통한 간접적 권고 방식 등 검토)
- 평가 등을 통한 지속적 보완 작업 추진
 - 유엔, 사회권 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관련 지표 개발 성과와 연계

② 사회권 규약 관련 이행 점검

- 08, 09년에 걸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권 현실을 더욱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점검
 - 특히, 09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사회권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사회권 연례 심포지엄과 연계

- 3차보고서 심의 주요사항 점검
 - 종합적인 사회권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 발간
- '경제위기와 사회권' 토론회 개최
- 사회권 심포지엄 개최
 - 관련부처, 전문가, 활동가 참여, 사회권 현주소 확인 및 개선방안 모색
- 사회권 심의 참가, 종합보고서 작성

③ 기업 인권 정책 및 교육의 내실화

- 유엔 글로벌 콤팩트 등 기업 인권 관련 국제적 추세에 부응
 - 특히 2010 세계국가인권기구 대회 주제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위원회 역량 강화와 한국사회에서의 인식 확산 등 추진 필요

- '기업인권정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TF운영
 - 기업, 소비자, 경제계, 노동단체, NGO 등 참여
 - 기업인권 정책자문위원회 조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기업인권경영에 관한 사회적 의제 및 정책개발, 기업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기업 인권분야 200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 기업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 국내주요기업 CSR담당자 정책간담회 개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권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쟁점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우수사례 발표
- 주요기업 및 현안대응 인권교육실시 및 지원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 주요 대기업 등
 - ※ 기업 CEO 및 중진간부를 대상으로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인권리스크 대처방안 등 사례중심의 교육 실시
 - 외국인 고용기업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인권교육

2. 빈곤계층 인권보장

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신장

○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관행의 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백혈병과 에이즈 치료 약제인 스프라이셀 푸제온 공급을 위한 정부의 관련 정책 개선 방안 검토
 - 08년에 접수된 진정 관련 정책 검토
 - 08년말 관련 간담회에서 도출된 쟁점 바탕으로 09년 후속 검토 작업
-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의 납입 방법 개선 및 긴급 의료지원 방안 등 모색
- 의료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는 환자권리장전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이 빈번히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08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② 노숙인 인권 개선

- 노숙인은 공권력은 물론 쉼터 및 의료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됨에도 보호제도가 대단히 미흡
- 09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노숙인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숙인 의 인권 개선 요청이 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

○ '05년 실태조사 결과와 09실태조사 결과 비교

- 노숙인의 적절한 주거 부재, 부실한 건강상태, 노동기회 확보 어려움 등 상호 연계된 영역에서의 실태 비교
- 정책토론회, 정책협의 진행 등

③ 방문조사 등을 통한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

-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를 3년간(2009~2011) 시행하고 보고서를 연차별로 수정 보완(대상시설은 연도 별로 한 개씩 차감)

○ '09년도 구체적 내용

-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방문조사 세부계획 수립
- 3개소 시설 방문조사 및 결과

④ 비주택 거주자 인권 개선

-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6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가구가 면적, 시설, 환경 등 인간다운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음
- 특히 최저면적 미달가구로 파악되지도 않는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21,630가구, 여관 등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가구가 9,073가구에 달함

-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 방안 검토
 - 주거이동을 통한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 빈곤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 및 공론화 도모

3. 비정규직 인권보호

① 여성 비정규직 텔레마케터 근로조건 개선

- 감정노동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노동감시, 간접 고용화,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및 차별 상황을 대표하게 된 여성 비정규직인 콜센터 텔레마케터의 차별개선 추진

- '08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콜센터 텔레마케터의 노동감시 및 감정노동 실태 등 근로조건 실태
- 감정노동 종사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정신과적 측면 고려)
- 콜센터 텔레마케터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개선 추진
 - 정책권고, 콜센터 텔레마케터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콜센터 텔레마케터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지역사무소와 협력)

② 여성 비정규직 모성권 및 건강권 보호

- 현재 건강권 보호의 일환으로 유통업체 계산대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의자를 비치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으나 개선 실적 미흡
 - 유통업 종사 여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널리 홍보하고 관련제도를 보완, 실질적 모성보호 및 건강권 강화 추진

- 건강권 캠페인에 대한 모니터링, 언론 기획보도 추진
- 노동조합,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수립
- 여성 비정규직 모성권 보호를 위한 정책관계자협의회(여성부, 노동부) 개최
 - 영세사업장의 모성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고용보험 관리 체계 효율화 등

③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개선

○ 비정규직 법 시행 후 노동현장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주용역(사내하도급)화 또는 무기계약직 형태가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대책 필요

- 외주용역(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방안 검토
 - 2008년 업무를 계속 추진해 2009년 상반기 정책권고 예정
 - 도급(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문제 및 차별시정제도 적용 배제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주용역(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안 권고
- 무기계약근로자 차별 및 인권개선방안 검토
 - 2007년 진행된 무기계약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기초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관심 유도, 여론형성에 기여
 - 현행 차별시정제도 적용의 배제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해 개선방안 권고

④ 비정규직 관련 법제 모니터링 및 개선

- 2005년 비정규직법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소득 양극화 및 비정규직 남용 문제에 대한 인권 개선 차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권고 추진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① 정부의 이주인권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이주정책 분야별(출입국, 교육, 문화, 여성, 복지, 자치행정 등)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3개년 사업)

- 정부의 이주 정책 관련 분야별 평가(09년도)
 - 출입국, 교육, 문화, 여성, 아동, 복지 등
 - 전문가,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토론회, 정책협의 추진
 -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지역사무소 자체 추진)
 - 지역별 인권개선 추진과제 발굴 검토(지역사무소 자체 추진)
- ※ 2차년도에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차년도에 제시(지침서 발간 등)

② 위원회 다문화 인권 사업 로드맵 구축

- '09년도 : 중장기 이주인권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을 위해 위원회에서 기권고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07-2011) 중 외국인 인권분야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 검토
 - 유관 부처의 중복성 다문화 정책 및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 하고 논의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등)
 - 현행 외국인 정책 및 제도가 결혼이민자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중기사업계획 및 인권증진행동계획에 따른 인권취약 이주민 대상별(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아동, 난민, 무국적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개선 및 기획조사 강화

③ 서울가이드라인 국내이행 강화

- '08에 도출된 서울가이드라인(Seoul Guideline)에 따른 후속조치(Seoul Process) 추진

- 국제협력 강화 : 주요 송출국 국가인권기구 방문 및 MOU 체결
 - 국내협력 강화 : 주한 송출국 노무관 및 이주민 간담회, 활동가 워크숍, 종교단체 간담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서울 프로세스 이행회의 개최, 서울가이드라인 이행 연례보고서 발간
 - 대국민 차별인식 개선 :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행사 개최,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비준 토론회 개최, 대국민 의식 개선 홍보

④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08년도에 실시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민자 종사자 및 외국인고용기업 관리자 인권교육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 출입국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교재 개발
- 강사단 구성 및 연수과정 운영 등
 -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강사단을 하계 및 NGO활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후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활용 워크숍 개최
 - 전문강사단 구성 및 강사 양성,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고용기업 관리자 인권교육 강사단 연수과정 실시(하반기)
- 기관 협의
 - 위탁운영 단체 및 기관의 종사자, 관리자 등 인권교육 실시하기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협의(1월~2월)
- 교육실시
 - 결혼이민자 종사자, 외국인고용기업 관리자 인권교육 실시(2월~11월)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기관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관련 공무원·교사 및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총 10회 이상 1000명 목표)

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① 인권친화적인 고용허가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고용허가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고용허가제 5주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 고용허가제 5주년 토론회 개최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이주노동자 인권수첩 제작

②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

○ 최근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도주 과정에서 사망사고 및 부상이 빈발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를 앞두고 단속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시설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경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권리구제와 사전예방 필요

- 단속 및 보호과정의 적법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관련 의견표명
-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
 - 화성, 청주보호소 (2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3개소)
 - 보호시설 운영개선 및 정책권고

3. 결혼 이주여성 인권증진

①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결혼중개업 관련 인권실태 모니터링
 - 결혼중개업법 검토
 -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여성부) 운영시 인권교육 제도화
 - 다문화 가정 밀집거주지역 정례 순회상담 실시
 -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 협력 강화
- 이주여성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모니터링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적용대상 검토
 - 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정책 검토
 - E-6-2(예술홍행) 사증 입국 여성 외국인의 인권보장 정책 검토

4.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인권보장

①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실시

- 2003.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모든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한국정부에서는 200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미등록이주자의 자녀에게도 의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결혼이민자 자녀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전개되고 있어 아동이 자국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이 미흡할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국내거주 이주아동의 인권실태 연구용역 제안 및 발주
 - 연구팀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이주아동 교육권 관련 정책권고
 - ※ 결혼이민자 자녀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난민 및 무국적자의 자녀 등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 학부모, 아동 네트워크 구축
 - ※ 이주가정 및 이주아동 대상 맞춤형 교육실시(지역사무소 추진)

②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령 및 제도 개선

-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제한관련 기획조사(정책권고)
 -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등 현황조사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법령 및 제도관련 정책권고

V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1. 차별금지법 제정

① 차별금지법 제정 모니터링

-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제17대 국회 논의 도중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정체성, 차별판단 및 예방 기준의 정립, 국제인권기준에의 부합 등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여전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되, '09년도에는 차별금지 법 제정 관련 모니터링 수준 정도로 추진

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①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 '05년 성차별·성희롱 업무의 이관, '08년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09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정부 차원의 차별시정 기능 업무는 확대·다양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 성, 나이, 장애차별 사유에서 고용차별 영역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기법 향상과 판단기준 정립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필요한 기반 구축에 필수적임
- 진정직업자격('09·'10년도 상반기), 간접차별('10년도 하반기~'11년도) 조사 매뉴얼 및 판단기준 정립
 - 우리 위원회의 고용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판결례 분석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판단기준 모니터링
 - 주요 진정사건 조사지원 및 판단 검토
 - 우리 위원회 매뉴얼 작성
- ※ '고용차별 개선 기반구축 TF'를 구성, 전체적인 플랜과 이론 구축 및 진정사건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 추진

② 임금차별 관행 개선

- 임금차별시정 기능은 고용차별시정기구로서의 정체성 정립에 필수
 - 임금차별 영역은 임금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전문성이 높은 연구가 요구되므로 외부 연구진에게 용역으로 추진
 - 인권상황실태조사로 선정
 - 전문가 간담회 개최

③ 연령차별금지법 시행효과 극대화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09. 3. 22부터 모집·채용 분야에서, '10. 1. 1.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 금지
- 우리 위원회가 1차 차별시정기구 역할 수행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홍보
 - 연령차별 모의 사례 검토
 - 리플렛 제작 및 배포
 - 전국 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 채용박람회 부스 등 구인자가 모이는 곳
 - 상공회의소, 중기청,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기업의 인사관련 회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서의 홍보
 - 기업의 채용관련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에 연령차별 관련 프로그램 반영 등
 - 위원회 홈페이지, 블로그, 전광판, 현수막 등을 매개로 한 홍보
 - 보도자료, 월간인권 기획기사, 언론사 공동기획 등 다양한 언론 홍보
 - 지역 설명회 등 지역사무소와 연계한 홍보·교육
 - ※ 노동부와 협의 채널 구성 협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연령차별금지법 관련 조사메뉴얼 마련(1/4분기 이내 완료)
 - 외국 사례 수집정리
 - '08년 완료된 '연령차별금지법과 위원회 나이차별 결정례 비교 분석' 반영
 - 한국 현실에 맞는 조사프로세스 유형화 등 매뉴얼 발간(내부용)
- 연령차별금지법 관련 차별행위 판단지침 마련
 - 연령차별금지법이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특정연령이 필요한 경우(진정직업자격), △근속기간의 차이(연 공급 임금제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설정된 정년, △특정연령 집단에 대한 지원조치(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법령 검토를 기초로, 이들 주제를 실제 사건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판단지침을 수립함.

- 신분·나이차별팀 및 차별시정총괄팀 실무자 포함 5~7인 규모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법령검토, 조사방법 및 차별판단논리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4회 진행하고 보고서 제출

3. 장애인 차별 개선

①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 촉진

-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령정비 및 파트너십 강화
 - 장차법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차법 상충 법령 및 그 이행상황 점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 장차법 시행이후 상충되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
 -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영역별 유관기관-시민단체 협력 체계 구축 및 간담회
 - 장차법 시행 1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주년을 맞아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 각 개최
 - 지역사무소와의 연계를 통한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 강화
-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판단기준 정립
 - 중기 전망을 토대로 한 단계별 추진전략 (2009~2011년)
 - 외국의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2009.1.~2009.3.)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의 문제점 조사 및 해소책 제시 (2009.3.)
 - 영역별 편의제공 의무 판단기준 작성 (2009.3.~2011.3.)
 - 고용 영역 (2009.3.~2009.12.)
 - 교육시설이나 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영역 (2010.1.~2010.3.)
 -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 (2010.4.~2010.12.)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영역 (2011.1.~2011.3.)
 - 편의제공 의무 이행의 경제적 영향평가 (2011.4.~2011.12.)

②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통한 차별시정 강화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 문화, 교육, 선거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해소 필요.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각종 문화접근권, 방송접근권, 교육권, 웹접근권,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대한 연구
-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포함한 교육접근권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제안 캠페인 전개
 - 다양한 차별개선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및 장애계를 대상으로 실시

③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교사·공무원·기업인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강사단을 구성해 인권강사 연수과정을 운영한 후 교사·공무원·기업인 대상 교육 실시(년간 1,000명 목표)
-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인권강사단을 구성해 인권강사 연수과정을 운영한 후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실시
- 사이버 교육용 콘텐츠 개발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 및 위원회 결정사례가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콘텐츠 1종 이상 개발
 - 기존 콘텐츠 및 시스템 보강하고 개발된 콘텐츠는 교육과학기술부 콘텐츠 품질 검사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교육훈련과)와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으로 등록 추진
-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대상 교육은 기존 공직자사이버인권 교육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시민대상의 교육은 인권교육센터, 그리고 교사교육은 교원대상 원격연수원 위탁연수를 통해 추진

- 또한 각 시도교육청 산하 연수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콘텐츠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 기관의 예산으로 교육성과 극대화

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완성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관련 종합적·체계적 실태조사와,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서 완성
- 또한 정신장애인의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활동과 문화 조성 노력 필요.

- 국가보고서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간담회와 지역별 공청회 개최
- 국가보고서 국회, 관계부처 권고 및 UN에 보고
- 국가보고서 발표를 위한 대규모 토론회 개최
- 정신보건의 날 관련 사진전 및 음악회 등 개최
- 국회, 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 관련 업무 종사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의 단계적·실효적 이행을 위한 유관기관과 토론회 공동개최

※ 2008년 시행한 자전거 캠페인의 전국적 이벤트 추진 검토

②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실시

- 정신장애(장애)분야 인권교육 과정운영
 - 인권교육 과정운영을 위한 회의체 구성 및 기획회의 개최
 - 인권교육 과정운영 계획수립 및 참가자 모집
 - 인권교육과정 참가자 선정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등
- 인권교육 공동추진
 - 정신장애(장애)분야 협회 또는 시설 등과 연계하여 2회 추진
 - 공공교육팀과 협회 또는 시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 마련, 강사지원, 장소섭외 등 일련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

- 정신장애(장애) 인권실천 매뉴얼 개발 보급
 - 자료수집 및 검토, 개발자 섭외 및 기획회의
 - 대상시설 2~3개소 참여 및 협력
 - 용역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 참여형식의 집필로 소요예산 최소화
 - 집필 후, 관련 협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매뉴얼 결정 보급
- 정신장애(장애)분야 인권교육 우수실천사례 발굴
 - 관련 단체·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현장종사자의 인권 관점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관련 협회와의 공동 협력 방안 마련
 -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우수실천사례 공모, 심사위원구성, 발표회 개최 등
- '08년도 개발 교재 발간·보급 및 활용 워크숍 개최
 - 정신장애 분야 교재 발간·보급 및 교재활용 워크숍 개최
- 인권교육 강사지원
 - 유능한 강사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5. 여성 인권 보호

① 군대 내 성차별 성희롱 개선

- 최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군대 내로 진입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양성 평등적 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미흡하고, 여전히 남녀 차별적 인식이 만연해 있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성차별 성희롱 사건이 발생
-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남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군의 양성 평등 지수를 높인다면 사회 전체의 양성평등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 실시(주요 조사 연구 내용)
 - 군대내 지휘관들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
 - 국방부의 여군 관련 정책현황 분석
 -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문화 및 관행
 - 여군 대상 모성보호 실태
 - 여군 대상 성희롱 발생 실태 및 경험 사례 조사
 - 외국군대의 여군 관련 정책 현황
- 군대 내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특별 사업

북한 인권 개선

※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북한인권 특위 및 전원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표명,’ 기타 정책권고 및 의견 표명의 연장선에 따라 사업전개

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 추진

- 북한내부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한 관련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개최
 -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2개월 1차례 정례화
 - 북한의 UPR(11월)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
- 북한내부 인권상황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북한인권포럼’ 개최 정례화
 -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연구 활동
 -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법·제도적 변화에 대한 연구 활동
-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추진
 - 북한 여성 인권 실태조사(2월 발주, 9월 완료)
 -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2월 발주, 9월 완료)
- 국외출장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정책연구 활동 활성화

- 북한의 국제사회 인권규범에 대한 대응 및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인권정책 분석을 위한 제6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 패널 참여)
- 미국, 유엔, 러시아 등 해외 출장(6-7월)
- 동북아 정세와 북한주민의 인권 아젠다 관련 학술회의 개최
- 홍보 및 단체방문
 - 북한인권 관련 자료 영문자료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홈페이지 및 실태조사 자료 영문화)
 - 월 2회 북한인권 관련 NGO 등의 방문을 통한 위원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추진
- 권고 및 의견표명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 북한여성 인권 실태조사,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논평 추진
 - 긴급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논평 추진(북한인권법안 및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포함)

②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 해결 노력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활성화
 - 관계기관 및 단체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관련 관련부처간 의견수렴
-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관련 법제 검토 및 모니터링을 통한 권고 및 의견표명, 논평 추진

③ 새터민(탈북아동) 인권 개선 노력 추진

- 새터민 직업 관련 정착지원에 관한 구체적 방안 모색
 - 탈북 아동 교육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
- 새터민 법률 보호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새터민 지원 조례 신설 등)
- 새터민 정착과정 관련 현시적이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개발

- 위원회의 국제사업을 제14차 APF 연례회의 전에 조기 시행하여 공식후보지명을 위한 분위기 조성
- 2010 ICC의장직 수임 세부계획 수립
- ICC 3개년(2010-2013) 업무계획 준비
- ICC 연례회의 (제네바) 참석, 지지기반 확대
- 이주민관련 아시아지역 NI 양자협정 체결
- 아태지역 NI 및 이라크 인권부 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 다문화관련 국제회의(Seoul Process) 개최
- 제14차 APF 연례회의(요르단)에서 지명 추진
- ICC 의장업무 지원팀 구성 추진
- 기타 09년도 국제교류 협력은 ICC 의장국 수임 작업을 병행 추진